

검 토 보 고 서

■ 조례명

-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■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 제18조 제5항중 "의견진술 기회의 부여"를 삭제함.

■ 개정사유

- 행정절차법(법률 제5241호)이 '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(의견청취)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18조 제5항중 "의견진술 기회의 부여"와 중복되므로 삭제코자함.

■ 검토결과(의견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등 의무부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"행정절차법"이 '9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 사전통지서, 청문통지서, 의견제출서등 모든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제18조 제5항중 "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"와 행정절차법 제22조(의견청취)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하는 조항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5항중 “의견진술기회의 부여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 (과태료의 부과징수)</p> <p>⑤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절차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8조 (과태료의 부과징수등)</p> <p>⑤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절차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